

# 계엄軍 “대통령 지시” 증언에 눈 질끈 감은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

곽종근·김현태 등 출석

윤 대통령 측과 배치되는 증언

헌법재판소 증인석에 선 계엄군 핵심 인사들의 잇단 증언으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무색해지고 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리는 지시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의원이 맞다”는 반박 증언이 나왔고, 국회에서 계엄군 철수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체 판단이었다는 새로운 진술도 나왔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은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고, 변론 8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검찰 조서에 적힌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40분께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국회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라고 이동 상황을 물었고,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변드렸다. 12월4일 새벽 0시30분께 윤 대통령이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안에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안의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이 “(윤 대통령)당시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지”라고 묻자, 그는 “정확히 맞다”고 했다.

이어 “당시 707특임단 인원이 국회 본관에 가서 정문 앞에서 대기 상황이고, 본관 건물 안 쪽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 상태로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 ‘안에 인원 끌어내라’는 부분들이 당시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또 그는 당시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끌어내라”, “대통령의 지시다”, “도끼로 문짝을 부셔서라도 끌어내라”, “전기를 차단하라”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으며 이 내용은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중 켜둔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원들도 같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국회에서)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증인석에서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과도 어긋난다.

그는 “김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회에 707특임단 병력과 함께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도 이날 증인으로 나섰다.

김 단장은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 봉쇄 및 확보”라고 증언했다. 다만, 김 단장은 이날 상급자의 국회 봉쇄 명령의 의미가 “의원 체포 등이 아니라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험 세력 방어였다”고 대답했다. 김 단장은 이어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거나 단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두 현재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야, 최상목 대행에 ‘비상계엄 대통령 자료’ 추궁

국회 내란진상조사특위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서 여당은 “마은혁, 여야 합의 안 된 후보이며, 한덕수 탄핵도 흠결”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 건넨 ‘쪽지’ 속 국가비상기구 등 문체”를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

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표결 시점에 여당은 (임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마 후보는 여

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마 후보자가 진보 성향 인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의원은 “헌법에는 국회가 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문건과 관련한 진상도 추궁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자료를 건넸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누군가가 접힌 쪽지 형태

로 자료를 줬는데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상황에서 경황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해당 자료에) 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 “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제 판단은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 최 대행이 마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방첩·수방·특전·정보 前사령관 ‘기소휴직’...자동전역 방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움직인 군의 사령관들이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재판을 받는다.

국방부는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6일부로 기소

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 명의 사령관은 지난달 20일 국방부에 의해 보직해임이 결정된 상태였다.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해임되면 자동으로 전역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들 사령관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민간으로 넘어가고, 추후 군 자체적 징계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박 총장의 경우 그의 보직해임을 심의해야 하는 선임 인원이 합참의장 1명뿐이어서 보직해임을 심의하기가 불가능했던 까닭에 직무 정지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제53회 강진청자축제

## 흙, 사람 그리고 불

2025. 2. 22(토) - 3. 3(월) / 10일간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요지 일원

### GANGJIN CELADON FESTIVAL

주최·주관 강진군·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